

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

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20년 하반기 용자지원계획



경 상 남 도
(농업정책과)

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

2020년 하반기 용자지원계획

코로나 팬더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 용자지원 계획을 수립,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함

I 지원개요

□ 지원배경

-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농·어업인 및 농업법인 경영 어려움 예상
-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·어가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해 '20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·2차 집행후 잔액 용자지원 필요

□ 지원근거 및 계획

- 근거 : 「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- 지원대상 : 도내 거주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인,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
- 대상선정 : 시·군 심의위원회 추천한자 중 도지사가 확정

※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·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 중
코로나 피해 농·어업인 본인 우선 선정('20년 상반기 용자지원 2차 계획 준용)

- 코로나19로 "확진" 또는 "격리(해제)"된 농·어업인 본인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
그 외 피해 상황은 시군 농정심의회 판단에 따라 우선 선정

⇒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(해제)대상자 해당 시·군 자체 확인

- ① 1순위 : 코로나19로 "확진" 또는 "격리(해제포함)"된 농·어업인 본인
- ② 2순위 : 코로나19로 인한 농·어업 피해를 입은 농·어업인
(단, 시·군특성을 감안하여 시·군별 기금배정액 한도내 농정심의회에서 판단)
- ③ 3순위 : 그 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농·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

II

기금운용현황

- 설치년도 : 1995년
- 기금조성액('19년말) : 1,108억원(도 581, 시군 225, 교부세 10, 이자 292)
 - 대여금액 722억원(65.1%) / 예치금액 : 386억원(34.9%)
- 용자실적
 - 2020년 상반기 : 745명, 168억원(운영자금 162, 시설자금 6)
 - '95 ~ '19년(25년간) : 37,306건 8,217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 지원액	1995 ~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 (상반기)
838,544	630,201	30,562	22,464	21,001	24,539	22,129	24,734	23,793	22,297	16,824

※ '95년 ~ '03년(9년간) 이자차액보전 용자, '04년부터 기금 직접 용자

- 용자취급기관 : NH농협은행

III

2020년도 하반기 용자지원계획

- 용자규모 : **9,746백만원**
 - 상반기(1,2차) 운영자금 용자(집행)잔액으로 편성 지원
- '20년 상반기 대여 및 잔액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20년 계획 (A)	상반기 대여실적(B)	하반기 대여 예정액 (A-B)	비 고
	35,000	16,824	18,176	
운영자금	26,000	16,254	9,746	
시설자금	6,000	570	5,430	
가격안정	3,000		3,000	

* 가격안정자금 : 친환경농업과의 별도 계획에 의거 하반기 중 집행

* 시 설 자 금 : 상반기 미 집행분 하반기 중 집행

- 용자용도 및 지원조건
 - 용자용도 : 운영자금
 - 용자금리 : 연 1%

- 용자조건 :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
- 용자한도 : 농어업인(30백만원), 법인 및 생산자단체(50백만원)

○ 시군별 용자배정액

구 분	배 정 액 (백만원)	비 율 (%)	비 고
합 계	9,746	100%	
창 원 시	596.7	6.1%	
진 주 시	1,114.6	11.5%	
통 영 시	478.9	4.9%	
사 천 시	529.2	5.4%	
김 해 시	467.4	4.8%	
밀 양 시	850.8	8.7%	
거 제 시	416.4	4.3%	
양 산 시	342.4	3.5%	
의 령 군	431.5	4.4%	
함 안 군	452.6	4.6%	
창 녕 군	535.6	5.5%	
고 성 군	641.3	6.6%	
남 해 군	452.1	4.6%	
하 동 군	417.5	4.3%	
산 청 군	342.8	3.5%	
함 양 군	376.8	3.9%	
거 창 군	599.6	6.2%	
합 천 군	699.8	7.2%	

* 시군 출연액, 농어가수 기준 및 시·군 상반기 운영자금 용자실적 가감률 적용 배정
(수요가 많은 시군 많이 배정)

IV

추진일정

- 용자계획 지침 시달 및 공고(도) : ‘20. 7. 17(금)까지
- 신청 접수 (읍·면·동) : ‘20. 7. 21(화) ~ 7. 31(금)
- 용자지원 신청서 전달 (읍·면·동 ⇒ 시·군) : ‘20. 8. 10(월)
- 용자지원대상자 심의 후 추천(시·군⇒도) : ‘20. 8. 21(금)까지
※ 「시·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」 심의
- 용자대상자 확정 통보(도⇒시·군, NH농협) : ‘20. 8월말
- 하반기 용자 실행(NH농협) : ‘20. 9월초 ~ 12. 11.
※ 용자대상자 확정 및 하반기 용자실행은 시군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,
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‘20. 12. 11.까지 농협 용자절차를 완료하도록 요청

V

행정사항

- (도, 시군)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: ‘20. 7. 21. ~
 - 시군 홈페이지, 지역신문, 반상회 자료 등 홍보 철저
 - 시군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용자 시행일정이 유동적임을 안내
- 객관적이고 타당한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 절차 확행
 - 용자 포기자 및 농신보, 농협은행 신용조회결과 대출 불가자 대체를 위한 예비후보자 선정
 - 시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시군 심의 및 추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
- 용자액은 백만원 단위로 함
- 원활한 사업추진 및 연말 용자신청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
운영·시설자금 ‘20. 12. 11.까지 농협은행 용자 절차 완료
-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‘20년 용자시행계획 참조

□ 용자대상

-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·생산자단체

☞ 단, 용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용자받은 후 타 시·도로 전출하는 경우,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용자금 회수

① 농어업인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어업인

② 법 인

-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
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
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·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
- 「상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·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

③ 생산자 단체

- 농어업 생산력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단체

□ 자금용도

○ (운영자금) 종자(묘), 농약, 비료, 원료, 사료 등 재료구입비, 광열·동력비, 농기계 구입비, 사용료, 시설·장비 임차료, 수송비, 유통·판매·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,

-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·가공·유통·수출을 위한 운영자금
-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

※ 제외대상 :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, 행사관련 경비, 선진지 견학,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,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, 인건비, 가계자금,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

□ 용자방법

〈 용자절차 〉

(사업대상자) 읍·면·동 신청

→ (읍·면·동) 자격여부 판단 후 시·군 진달

→ (시·군) 「시·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」심의 후 도 추천

→ (도) 용자 대상자 확정 후 시·군 및 용자취급기관 통보

→ (NH농협은행) 용자금 대출

○ (용자규모) 9,746백만원

○ (용자한도)

- 농어업인 : 운영자금 3천만원

- 법인 및 생산자단체 : 운영자금 5천만원

○ (용자조건) 대출금리 연 1%

- 운영자금 :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

○ (용자실행) NH농협은행

-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며, 사업대상자는 NH농협은행
대출담당자에게 대출관련서류 제출
(대출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)

- 용자금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

□ 용자신청대상자 심의기준

① 우선 지원대상

- 재해 농어가의 재해복구를 위한 운영자금
 - ※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·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 중 코로나 피해 농·어업인 본인 우선 선정
 - ① 1순위 : 코로나19로 “확진” 또는 “격리(해제포함)”된 농·어업인 본인
 - ② 2순위 : 코로나19로 인한 농·어업 피해를 입은 농·어업인(단, 시군특성을 감안하여 시군별 기금배정액 한도내 농정심의회에서 판단)
 - ③ 3순위 : 그 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농·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
-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
-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
- 한육우 등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
-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
- 경남농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
- 기존 시설 육성을 위한 운영 및 시설자금
- 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
- 도내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사업
-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등

② 지원제외

-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
(상시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는 자)
-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
-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용자지원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경우

- 2020년 다른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또는 지원예정인 농어업인, 법인 및 생산자단체
- 연체 등 사유로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등

※ 위의 내용은 기본 심의기준이며 시군의 사정에 맞게 일부 변경, 추가 가능

- 붙임 : 1. 2020 하반기 배정액 산출내역 1부.
2. 2020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공고안 1부. 끝.